

契約書式の 交戦問題에 관한 小考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Battle of the Forms

韓 南 星*

目 次

- I. 序 論
- II. 契約書式の 交戦 問題에 관한 接近方式
 - 1. 傳統的 契約法에서의 接近方式
 - 2. 美國 統一商法典에서의 接近方式
 - 3.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에서의 接近方式
- III. 契約書式の 交戦問題에 대한 電子文書交換約定모델에서의 實務的 接近方式
 - 1. 商業的 去來條件에 관한 電子文書交換約定모델에서의 두가지 立場
 - 2. 美國 EDI約定모델에서의 去來條件에 관한 實務的 接近 方式 및 契約書式の 交戦問題
- IV. 結 論

* 韓國國防研究院, 研究委員.

I. 序論

國際間的 物品賣買에서는 通常的으로 電氣, 電話, 텔렉스 등과 같은 電氣 通信手段에 의하여 請約과 承諾이 행해진다. 國際貿易實務의 세계에서 去來 當事者는 主要 契約條件에 대해서 重點적으로 交渉하며, 부수적인 個別條件에 대해서는 當事者들이 표준적 約款이 인쇄되어 契約書式을 주고 받음으로써 契約을 締結한다. 이러한 契約의 交渉過程에서 賣買 當事者들은 價格, 品質, 數量, 納期 등 주요한 條件에 대해서는 交渉을 통한 合意를 이루지만, 品質保證, 클레임제기기간, 仲裁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合意가 없이 상호간의 不一致를 남겨둔 상태에서 去來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 物品賣買에서는 대부분 경우, 契約書式的 條項間에 不一致가 있는 狀況에서도 아무런 紛爭없이 去來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에서는 작은 확률이나마 賣買 當事者間에 紛爭이 발생할 素地는 상존한다. 紛爭은 다음 두가지의 狀況에서 발생된다.”

첫째, 契約이 履行되기 전에 시장가격의 騰落과 같은 狀況의 변화가 일어나 契約當事者중의 一方이 契約不履行에 대한 구실로 契約書式的 不一致를 주장하는 狀況이다. 둘째, 賣渡人이 物品을 船積하고 買受人이 이를 受領한 후, 物品의 品質과 같은 契約履行上의 一部 측면에 대한 紛爭이 발생되어 이 紛爭에 適用될 契約條項을 決定해야 할 狀況이다. 이와같은 狀況이 소위

1) E. Allan Farnsworth, "Formation of Contrat," in *International Sales :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ed., Mina M. Glaston and Hans Smit, Matthew Bender, 1984, p. 3-15.

契約書式の 交戦(the battle of the forms)에 대한 問題이다.

契約書式の 交戦에 대하여 前述한 두가지의 問題는, 傳統的으로 대부분의 法體系에서 完全一致의 原則(mirror-image rule)²⁾에 의해서 다루어졌다. 이러한 傳統的인 接近方式에서는 만약 契約이 成立한다면 그 契約을 지배하는 條項을 決定하기가 容易하므로 두번째 狀況과 같은 紛爭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원칙하에서는 첫번째 類型的 紛爭을 유발하였다. 왜냐하면 當事者들이 契約의 不履行을 정당화시키려는 契約條項의 不一致를 용이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契約書式の 交戦 問題에 대하여, 美國의 統一商法典에서는 傳統的인 接近方式과는 달리, 上記 첫번째 類型的 問題인 契約履行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方向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에서는 美國의 接近方式과는 달리 傳統的인 完全一致의 原則을 거의 變更시키지 않는 方向에서 이 問題를 다루고 있다.

한편 1980년대이후 國際貿易去來에서 電子文書交換(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方式에 의한 貿易去來가 확산됨에 따라, 종래의 文書에 의한 契約書式の 交戦 問題는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DI去來 방식이 고도로 定型化되고 코드화된 메시지의 交換에 의한 통신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去來條件에 대한 交渉은 보다 표준화되고 기본적인 契約條項만을 다루고 있어 기타 附隨條件에 대한 契約書式の 交戦 問題가 야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각국의 同種業界와 貿易業界에서는 標準

2) 승낙은, 淸약을 거울에 비추어 나오는 것처럼 淸약의 조항 그대로를 동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完全일치의 원칙임.

EDI去來 當事者間 約定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

본 論文에서는 立法例를 중심으로 契約書式의 交戰 問題 대한 接近方式을 검토하고, 최근의 EDI방식에 의한 貿易去來에서는 實務的으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의 事例를 검토한 후, 이 問題에 대한 貿易商務的인 대책을 結論으로 提示하고자 한다.

II. 契約書式의 交戰 問題에 관한 接近方式

1. 傳統的 契約法에서의 接近方式

傳統的인 契約法에서는 大陸法에서도, 英美의 普通法에서도 契約은 請約과 承諾에 의하여 成立되며, 이때 承諾은 請約의 條項에 대하여 최종적인 동시에 無條件의 同意를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³⁾ 承諾이 承諾으로서 契約을 成立시키기 위해서는 請約의 條項 그대로 同意한 것이어야만 되고 사소한 追加變更도 허용되지 않고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傳統的인 英美法에서의 思考方式이다.⁴⁾

원칙적으로 어떤 條項에 대한 請約이 이루어진 후 被請約人이 相異한 條項을 요구하면, 그것은 對應請約(counter-offer)이 되고, 이 새로운 條項이 承諾되지 않으면 契約은 成立되지 않는다. 그러나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

3) 新堀 聰, 「貿易取引入門」, 日本經濟新聞社, 1992, pp. 71-72.

4) 大陸法系인 한국민법(제 534조), 독일민법(제 150-2조), 일본민법(제 528조)에도 청약을 변경한 승락은 청약의 거절로 간주하고 있음.

이 當事者들이 契約이 締結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契約上 중요한 條件을 履行한 경우, 契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할 것이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去來 當事者 각각의 條件이 提示되고, 이를 相對方에게 충분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로써 決定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一方의 當事者가 이와 유사한 方法의 通知나 相對方의 默示的 承諾에 의해서 자기의 條件이 相對方의 條件을 대체했다고 말할 수 없다면, 그 當事者는 相對方의 條件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였다고 推論할 수 있을 것이다.⁵⁾

따라서 完全一致原則下에서 契約書式の 交戦에 대한 接近方式은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當事者간에 주고 받은 契約書式 및 그 후 當事者의 行爲증에서 請約과 承諾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의 與否를 검토하여, 請約과 承諾에 해당하는 契約文書가 발견된 경우 契約의 成立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契約이 成立되었음을 믿고 있는 當事者가 履行에 해당하는 行爲를 했다면, 이 當事者의 行爲를 최후에 送付된 契約書式에 대한 承諾으로 보고 契約의 成立을 인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후에 送付된 契約書式の 條項이 當事者간의 契約內容이 된다. 이를 “최후에 送付된 契約書式이 優先한다는 原則(the last shot doctrine)”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컨대, B.R.S v. Arthur V. Crutchley Ltd. 事件⁶⁾에서, 原告는 被告에게 위스키를 보관하기 위하여 인도하였다. 원고의 운전사는 피고에게 運

5) A. G. Guest et al., eds., Benjamin's Sale of Goods, 3rd ed., Sweet & Maxwell, 1987, p.146-147.

6) [1968] 1 All E.R. 811. (A.G. Guest et al., eds., Chitty on Contracts vol. 1, Sweet & Maxwell, 1983, p.59).

送約款이 기재되어 있는 화물인도서를 넘겨 주었다. 피고는 이 인도서에 “폐사(피고)의 약款에 의하여 수령함”이라고 도장을 찍었다. 이 事件에 대하여, 피고의 行爲는 對應請約에 해당되고 원고는 物品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承諾하였으므로 이 契約은 원고의 약款이 아니라 피고의 약款에 의하여 成立한다고 判示되었다.

이 事件은 소위 “최후에 送付된 書式이 우선한다는 원칙 ”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事件에서는 이 원칙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요하고 있다. Butler Machine Tool Co v. Ex-Cell-0 Corpn. 事件⁷⁾에서 賣渡人은(原告) 그의 契約書式에 기재된 裏面條件에 따라 어떤 기계를 공급하겠다고 請約하였다. 그 條件에는 예상납기일 전에 비용 증가시 가격을 인상한다는 價格變動附條項(price-variation clause)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請約에 대하여 買受人은, ‘이 文書는 契約을 지배한다’고 기재되고 價格變動附條項을 포함하지 않은 자기의 서식을 賣渡人에게 送付하였으며, 賣渡人에게 確認書의 返送(tear-off slip)을 요구하였다. 賣渡人은 ‘引導는 자기의 종전 見積에 의거한다’는 서한을 첨부하여 이 確認書를 반송하였다. 이 事件에 대하여 영국 抗訴審은 買受人이 의도했던 請約에 대한 承諾은 法律上 對應請約이며, 賣渡人은 確認書를 반송함으로써 對應請約을 承諾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위 事件에서 賣渡人은 비록 최후에 文書를 送付하였으나 買受人의 契約條件에 따른다는 確認書와 함께, 賣渡人 자신의 일부 條件(인도)만을 첨부하여 送付함으로써 賣渡人의 條件은 對應請約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7) [1979] 1. W. L.R. 401 (P.S. Atiyah,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 4th ed., Clarendon Press, 1989, pp. 72-73).

賣渡人이 자신의 條件을 주장하려면 그의 條件全體(his own set of terms)를 明示的으로 提示해야만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의 行爲가 결과적으로 모순된다면 자신의 條件適用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⁸⁾

契約書式の 交戦 問題에 대한 傳統的인 契約法에서의 接近方式은 다음과 같은 問題를 지니고 있다. 즉 '完全一致의 原則'을 너무 엄격하게 고수할 경우, 當事者間에 주요 契約條件에 대해서 合意가 이루어졌거나 契約履行行爲를 하기전에 市場狀況이 急變한 경우, 不利해진 當事者가 契約書式上의 기타 條件에 대한 不一致를 이유로 契約의 不成立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또한 完全一致의 原則下에서는 최후에 送付된 契約書式이 우선하므로, 貿易業者들이 계속적으로 對應請約을 할 유인을 갖게 된다.⁹⁾

한편 國際物品賣買去來의 현실세계에서 當事者는 주요한 契約條件에 관해서 合意가 이루어지면, 當事者間에 交換된 契約書式에 기재되어 있는 그 밖의 條項에 대해서는 相違가 있어도 契約은 成立한 것으로 믿고 행동하기 때문에, 紛爭 發生時 對應請約을 한 當事者의 條件만을 一方的으로 適用한다는 것은 公平하지 못한 것으로 思料된다.

2. 美國 統一商法典에서의 接近方式

契約書式の 交戦問題와 관련하여 美國의 統一商法典(Uniform Commercial Code:UCC) 第 2-207條(承諾 또는 確認에서의 附加條項:Additional Terms in

8) A. G. Guest et al, eds., *Benjamin's Sale of Goods*, p. 147.

9) 송계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1991.3, p.179.

Acceptance or Confirmation)에서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① 합리적인 기간내에 送付된 명확하면서도 適時의 承諾表現 또는 서면에 의한 確認은 비록 그것이 請約 또는 合意된 條項에 附加 또는 다른 條項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承諾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단 그 承諾이 附加條項 또는 다른 條項에 대한 동의를 明示的 條件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附加條項은 契約에 대한 附加 提議로서 해석하여야 한다. 상인간에 이와같은 條項은 契約의 일부가 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a) 請約이 請約의 條項대로 承諾되기를 明示的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

(b) 附加條項이 請約을 實質的으로 變更시키는 경우; 또는

(c) 附加條項에 대한 異議의 通知가 완료되었거나 또는 그 異議 通知가 附加條項에 대한 通知의 수령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진 경우

③ 契約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兩當事者의 行爲는, 이러한 行爲가 없으면 當事者의 文書가 契約을 입증하지 않는 경우에도, 賣買契約을 成立시키기에 충분하다. 이 경우 當該契約의 條項은, 當事者가 서면으로 合意한 條項 및 이 法律의 다른 規定에 포함되어 있는 補充的 條項에 의하여 構成된다.

當事者間에 契約書式을 주고 받은 후 紛爭이 발생한 경우, UCC 제 207조 하에서 適用되는 契約條項은 契約이 어떠한 경로로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決定되므로 契約의 成立 경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條項에서 契約의 成立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의 경로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¹⁰⁾ 즉 첫째,

10) James J. White & Robert S. Summers, *Uniform Commercial Code*, 3rd ed., West Pub., 1988, pp.39-40.

同條 ①항의 명확하면서도 적시의 承諾表現에 의하여 契約이 成立한 경우 (편의상 A경로라 함) 둘째, 同條 ①항의 但書條項에 의한 明示的 條件附 承諾의 경우(B경로) 셋째, 同條 ③항의 양 當事者의 行爲에 의하여 契約의 成立이 이르게 된 경우(C경로)로 구분할 수 있다.

(1) 被請約人의 承諾表現이 있는 경우(A경로)

제 2의 서식(被請約人의 서식)에 附加 또는 다른 條項이 있어도 承諾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는 傳統的人 普通法上的의 ‘완전일치원칙’(mirror image rule)하에서는 對應請約에 해당된다. UCC제 2-207조 ①항은 普通法上的의 ‘완전일치원칙’을 거부하며, 普通法上的의 對應請約의 다수를 承諾으로 인정한다.¹¹⁾

위와 같은 경우 成立된 契約의 內容은 同條 제 ②항에 의하여 決定된다. 그러나 이 제 ②항에는 附加(additional)條項에 관하여는 言及하고 있으나 제 ①항에서 言及된 다른(different)條項에 대한 言及이 없기 때문에 다른 條項을 附加條項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느냐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와 判例가 엇갈리고 있다.¹²⁾ 이 問題에 대하여 White & Summers는 UCC 제 207조의 초안자들이 다른 條項을 의도했었다면 同條 ②항에 The additional terms(이 부분은 필자삽입) " or different"라고 용이하게 삽입할 수 있었을 것¹³⁾이며,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相違한 條項을 동일한 契約의 一部로서

11) Idaho Power Co. v. Westinghouse Electric Corp., 596 F.2d 924, 26 UCC 638 (9th Cir. 1979) 등 (White & Summers, op. cit., p.30).

12) Ralph M. Savage, "How to Resolve Legal Issues in EDI Agreements: Acknowledgements and the Battle of the Forms," EDI Forum no.1, 1991, p.71.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言及하고 있다. 반면에 日本의 新堀 聰은 “다른 條項을 附加條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論議自體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다른 條項에 대해서 確實히 規定해야만 한다”고 記述하고 있다.¹⁴⁾

한편 UCC 제 2-207조 ② (b)항은 附加條項이 請約을 實質적으로 變更시키는 경우, 이 附加條項은 契約의 一部가 되지 못함을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承諾에 포함된 어떤 條項이 請約을 實質적으로(materially) 變更시키는지의 여부는 복잡한 問題이다. UCC 제 2-207조에 대한 註釋 제 ④항은 “相對方이 명백히 알지 못한 채로 契約書에 附加된다면 相對方을 驚악하게 하거나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result in surprise or hardship if incorporated without express awareness by the other party)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 주석은 實質적인 變更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서 去來慣行에 모순되는 數量變更可能條項, 買受人이 適期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賣渡人에게 契約取消權을 부여하고 있는 條項, 불만사항이 부당하게 짧은 기간에 제기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條項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동 주석은 非實質적인 變更(non-material changes)으로서는, 不可抗力條項, 적절한 기간내의 불만사항제기 要求條項,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자부과, 구제의 제한 등을 들고 있다. 實質的 變更 與否問題에 대한 判例

13) Accord American Parts Co., Inc. v. American Arbitration Ass'n, 8 Mich. App. 156, 154 N.W. 2d 5, 6 UCC 119 (1967); 대부분의 판례는 2-207(2)를 “다른”(different)조항에 적용하지 않음; 또한 “다른”(different)조항을 단순히 “부가”(additional)”조항으로 잘못 구분한 판례도 있음(White & Summers, op. cit., p.32).

14) 新堀 聰, 前掲書, p.77.

는 一般的으로 이 주석을 따르고 있다. White & Summers는, 承諾人이 그가 附加한 條項이 UCC 2-207 ②에 의거한 實質的인 變更이 아니라고 주장하여도 이 承諾人이 좀처럼 勝訴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當事者들이 이 爭點에 대하여 抗訴審까지 이른 것 자체가 이 條項이 實質的인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言及하고 있다.¹⁵⁾

(2) 明示的인 條件附 承諾(B경로)

被請約人이 附加條項 또는 다른 條項에 대한 同意를 明示的 條件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이는 普通法上的 對應請約이 된다, 따라서 최초의 請約人이 對應請約을 承諾할 경우, 이 條項이 契約을 構成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被請約人은 對應請約에 대한 請約人의 明示的인 同意條件을 분명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賣渡人은 承諾은...아래에 기술되고 裏面에 인쇄되어 있는 附加 또는 다른 條項에 대한 買受人의 同意를 明示的 條件으로 한다. 만약 이 條件을 수락할 수 없다면, 買受人은 즉시 賣渡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¹⁶⁾라고 최초 請約人에 대한 明示的인 同意條件을 提示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소 덜 분명하게 提示된 文言, 예를들면, “貴側의 주문에 대한 承諾은 본 契約書의 前面과 裏面에 기재된 모든 條件에 따른다”라고 한 事件¹⁷⁾에서와 같이 相對方側의 同意를 明示的 條件으로 아주 분명하게 提示하지 않은 것은 對應請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法院은 一般的으로 UCC

15) White & Summers, op. cit., p.38.

16) C. Itoh & Co. (America) Inc. v. Jordan International Co., 552 F. 2d 1228, 21 UCC 353 (7th Cir. 1977).

17) Dorton v. Collins & Aikman Corp., 453 F. 2d 1161, 10 UCC 585, (6th Cir. 1972).

제 2-207(1)의 但書條項에 의한 契約構成을 매우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對應請約人の 契約書式을 읽어 보지 않을 수도 있는 最初 請約人이 곤경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立場이다. 소위 “최후에 送付된 契約書式이 우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anti-last shot” policy)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賣渡人(被請約人)이 請約人の 契約書式에는 없었던 條項(예를 들면 仲裁條項)을 삽입하여 2-207 ① 但書條項에 의거하여 分명한 對應請約을 提示한 후 賣渡人은 物品을 인도하고, 買受人이 賣渡人 反송서식에 明示적으로 동의하였다면, 이 契約에는 賣渡人の 對應請約 서식이 適用된다. 물론 이는 전형적인 普通法上的의 원칙이다. 그러나 만약 買受人이 明示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단지 賣渡人이 인도한 物品을 수령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判例는 이와같은 行爲만에 의한 “承諾”(“acceptance” merely by conduct)은 2-207 ①의 의미에서 (B경로) “동의”(assent)를 構成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이 경우 契約은 2-207 ③ (C경로)에 의하여 成立되며 契約條項은 UCC 제 2편의 補充規定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White는, “중립적”인 補充規定(“neutral” Code gap-fillers)이 이 條項(附加條項)에 適用되므로 이와같은 해결방안이 적합하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반면에 Summers는 이와같은 해결방안은 行爲에 의한 承諾(conduct acceptance)을 인정하고 있는 普通法에 反하는 것이라고 유감스러운 立場을 밝히고 있다. Summers는 賣渡人の 物品受領 및 수락은 어떤 경우에는 UCC 2-207 ①, UCC 1-103(Supplementary General Principles of Law Applicable) 및 普通法에 의해서 契約이 成立된다는 立場을 보이고 있다.¹⁸⁾

18) White & Summers, op. cit., p.40.

(3) 兩 當事者의 行爲에 의한 契約成立의 경우(C경로)

UCC 2-207 ②에 의하여 契約이 成立되지 않았으나 兩 當事者들이 契約의 成立을 믿고 履行을 한 경우에는 다음 두가지의 接近方式이 가능하다. 첫째 傳統的 契約法理論의 接近方式을 택하는 경우 최후에 送付된 契約書式이 對應請約이 되고, 처음에 契約書式을 送付했던 當事者의 履行이 承諾을 構成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마지막까지 끈기있게 최후로 契約書式을 送付한 자의 契約條項이 그대로 契約을 構成하게 된다. UCC 2-207은 이러한 접근을 택하지 않고 同條 ③항의 規定에서와 같이 當事者行爲가 없으면 當事者의 文書가 契約을 입증하지 않으나 當事者들의 行爲가 契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適用된다. 또한 이 條項은 當事者들이 文書로써 合意에 이르지 못하였던 狀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렇지 않으면 이 2-207 ③항은 適用될 수 없다. 2-207 ③항에 의하여 契約이 成立된 경우 合意가 되지 않은 條項에 대해서는 어느 當事者의 條項도 適用되지 않고 UCC제 2편의 표준적인 條項이 契約內容을 補充하게 된다. 실제적 狀況에서 이러한 해결방안은 賣渡人에게 不利하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賣渡人은 흔히 UCC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物品의 품질에 대한 책임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덜 부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¹⁹⁾

前述한 세가지 契約成立경로에 의한 분석은 去來事項에 대하여 事前에 口頭 또는 非書式的인 合意가 없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제 주요 去來事項에 대하여 사전에 口頭合意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19) Ibid., p. 43.

(4) 사전에 口頭 合意가 있는 경우

UCC 제 2-207 ①항에는 確認書(confirmation)가 合意된 條項에 附加(additional) 또는 合意된 條項과 다른(different)條項을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承諾으로서 효력이 있음을 言及하고 있다. 사전에 口頭로 合意한 후 當事者의 一方 또는 兩 當事者가 確認書를 送付하기로 한 경우, 이 問題는 UCC제 2-207 ① 및 ②의 결과 및 UCC 제 2편의 關聯補充 規定에 의거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²⁰⁾ 이때 確認書에서의 附加 또는 다른 條項이 契約을 實質적으로 變更시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이 條項이 契約의 一部를 構成하는지의 與否가 決定된다.

만약 確認書에 최초의 口頭 또는 기타 비서식적 合意와 다른 條項이 기재되어 있을 때, 이 다른 條項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 附加條項이나 혹은 다른 條項이나를 決定하는 비교기준은 相對方의 確認書가 아니라 최초의 約定이다.²¹⁾ 附加條項이 最初契約의 一部를 構成하는가의 여부는 이 附加條項이 最初契約의 內容을 實質적으로 變更시키는지의 여부와 이 契約과 相關한 貿易慣習(trade usage) 및 去來過程(the course of dealing)에 의해서 決定된다.²²⁾ 또한 두가지의 確認書間에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면 이는 同條 제 ②항 (C)에 의하여 當事者가 서로 異議를 通知한 것이 되어 契約의 一部를 構成하지 못한다. 그러나 同條 註釋6은 이 경우에 UCC의 補充規定이 適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White & Summers는 일단 契約이 成立되면 UCC 제 2-207 ③항의 補充規定은 適用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만약

20) Ibid., p. 44.

21) Ibid., pp. 45-46.

22) Ibid., p. 44.

契約의 일부가 되었다면 이는 當事者들이 履行過程에 의해서 또는 禁反言 (by virtue of an estoppel)에 의해서 契約을 수정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³⁾

여하튼 當事者간에 구두, 전화, 텔렉스 등 비서식적인 방식에 의하여 合意가 成立된 후 確認書를 주고 받은 경우 當事者間的 契約은 최초의 合意사항, 確認書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 條項 및 統一商法典의 補充規定에 의하여 構成된다고 볼 수 있다.

美國 統一商法典 제 2-207조는, '完全一致의 原則'을 수정했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規定이지만, 초안작성시 이 規定이 다루어야 할 범위를 보다 신중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規定을 그대로 契約書式交戦의 실제 問題에 適用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으며,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그 適用이 매우 복잡하다. 이 規定의 초안자들은 원래 契約의 成立을 부정함으로써 그 履行을 회피하려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契約 履行의 착수시점 또는 履行後의 紛爭에 대해서 무슨 契約條件을 適用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당사자들 간에 많은 소송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²⁴⁾

3.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에서의 接近方式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에서는 契約書式の 交戦問題

23) Ibid, p.46.

24) 新堀 聰, 前掲書, p.78; White & Summers, op. cit., p.30 and p.48; Farnsworth, op. cit., p.3-15.

에 대하여 UCC제 2-207조의 接近方式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傳統的인 ‘完全一致의 原則’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 협약 제 19조 (1)항에서는, ‘承諾을 의도한 請約에 대한 응답으로서 請約에 附加, 삭제, 기타의 變更을 가하고 있는 것은 請約에 대한 거절인 동시에 對應請約이다’라고 規定함으로써 기본적으로 ‘完全一致의 原則’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同條 제 2항에서는 完全一致의 原則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전항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承諾을 의도한 請約에 대한 응답이 請約에 附加 또는 다른 條項을 포함한 경우에도 請約중의 條項을 實質的으로 變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응답은 承諾이 된다. 단 請約人이 지체없이 구두로 그 相違에 대한 異議를 제기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로 通知를 발송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請約人이 異議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契約의 條件은 請約과 承諾에 포함되어 있는 變更된 條件으로 한다.”

이와 같이 비엔나협약의 規定에 의하면, 被請約人이 請約의 內容을 實質的으로 變更하는 것이 아닌 條件을 붙여 承諾을 한 경우, 請約人이 지체없이 그 條件을 부정하는 通知를 발송하면 契約은 成立되지 않는다. 그러나 前述한 UCC 제 2-209(1) 아래에서는 變更된 條項에 대한 請約人의 동의를 承諾의 條件으로 한다는 明示的인 유보가 없는 한 契約은 成立되고 그 變更條項중에서 다른(different)條項은 契約內容의 一部를 이루지 못하지만 附加(additional)條項은 同條(2)항의 但書條項에 해당되지 않는 한 契約의 內容을 이루게 된다. 비엔나협약의 경우에는 附加條項과 다른 條項間의 구별이 없다. 비엔나협약에서는 請約의 內容을 變更하여 承諾한 경우 請約하는

즉시 異議를 제기하여 契約의 成立자체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契約이 成立되는 경우 그 變更된 條件을 契約의 內容으로 한다는 것이며, UCC 제 207조에서는 다른 條項을 붙인 承諾인 경우 契約은 成立될 수 있으나, 이 다른 條項이 契約의 일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規定이 없으며, 美國의 대부분의 判例는 다른 條項은 契約의 일부가 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²⁵⁾

또한 비엔나협약 제 19조 (3)항은 請約중의 條項을 實質적으로 變更시키는 예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특히 價格, 決濟, 物品의 數量, 引渡의 場所 및 時期, 相對方에 대한 一方의 책임의 범위 및 紛爭解決에 관한 附加 또는 다른 條件은 請約의 條項을 實質적으로 變更한 것으로 본다.

위 (3)항에 提示된 實質적인 變更에 해당하는 例示적인 條項을 볼 때 保證條項(warranty clauses), 保證排除條項(disclaimer clauses), 不可抗力條項(force majeure clauses), 救濟制限條項(limitation of remedies clauses) 등과 같이 보통 契約書式の 裏面約款에서 볼 수 있는 條項은 거의 實質적인 變更에 해당²⁶⁾하기 때문에, 當事者간에 이들 條項이 모순되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契約의 成立을 부정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생각된다.²⁷⁾

25) 이균성, “국제매매계약의 성립”, 임흥근·이태희 공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제문제」, 삼지원, 1991, p.101. 註 65)의 일부를 수정하여 인용함.

26) 비실질적인 변경의 예로서는 c.i.f. 계약하에서 지정선박의 변경 또는 물품의 포장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27) 新堀 聰, 「國際統一賣買法」, 同文館, 1991, p.40.

비엔나 협약에서는 모순되는 確認書의 처리에 관해서는 明示的인 規定이 없지만 동 협약 제 7조 (1)항에 規定되어 있는 '國際貿易에서의 信義의 遵守'라는 일반원칙을 適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순되는 條項에 대하여 當事者가 자기의 條項을 一方的으로 주장하는 것은 信義에 어긋나므로 부정되고, 問題의 條項에 대해서는 본 협약의 規定 또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補充하며, 만약 關聯補充規定 또는 一般原則이 없는 경우에는 國際私法의 규칙에 의하여 適用되는 國內法의 規定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²⁸⁾

따라서 비엔나협약 제 1조의 完全一致의 原則이 사실상 모든 경우에 適用되고, 또 이에 대한 例外 規定인 동협약 제 2조는 극히 드물게 適用될 것이다.²⁹⁾ 契約書식의 交戰問題에 대한 비엔나협약의 規定이 UCC 제 2-207의 接近方式에 가까워지기보다는 傳統的인 接近方式으로 회귀한 것은 동협약의 초안과정에서 UCC방식에 따른 不確實性의 增大보다는 去來의 安全性確保를 추구하는 各국 대표들의 의견이 더욱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협약 제 19조하에서는 當事者間에 양 서식의 內容이 相違하고 그것이 實質的인 變更을 가져오면 契約은 成立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契約의 履行行爲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當事者間에 최후에 送付된 서식이 契約內容을 構成한다. 즉 相對方의 履行行爲에 의하여 최후의 對應請約이 承諾된 것으로 해석된다(동협약 제 18조 제 3항) 따라서 賣渡人과 買受人間에 최후에 送付된 契約書식이 紛爭解決에 適用된다.

28) 新堀 聰, 「貿易取引入門」, pp. 89-90.

29) Farnsworth, op. cit., p. 3-17.

Ⅲ. 契約書式の 交戦問題에 대한 電子文書交換約定모델에서의 實務的 接近方式

1. 商業的 去來條件에 관한 電子文書交換 約定모델에서의 두가지 立場

電子文書交換方式(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이란 約定된 메시지 표준에 의거한 구조화된 資料(去來文書)를 정보체계간(between information systems)에 전자적 방식으로 電送(transmission)하는 것이다.³⁰⁾

國際物品賣買에서 EDI의 활용은 契約書式の 交戦問題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종래의 文書去來環境에서와는 달리 EDI利用當事者는 請約 또는 承諾을 文書의 형태로 모든 去來條件을 交渉할 수 없다. EDI去來에서의 請約과 承諾의 內容은 고도로 定型化되고 부호화된 메시지 (highly structured and coded messages)로 電送되며, EDI當事者는 電送되는 자료량에 비례하여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므로 非定型化된 文章 (free-text)形態의 商業的 去來條件(commercial terms and conditions)을 일일이 EDI를 통해서 交渉하기에는 현재까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곤란

30) TEDIS Programme, European Model EDI Agreement TRADE/WP.4/R. 784, 6 Aug. 1991, p.6; EDI의 정의는 그 이용자들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다소 표현을 달리하여 정의되기도 하나, EDI의 핵심적인 개념은 EDI자료가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in machine-processable form)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것이다. 즉, EDI메시지는 사람의 추가적인 해석이나 재입력과정없이 수신자 컴퓨터에 의해서 즉시 처리될 수 있는 점임.

한 問題이다.

따라서 EDI去來에 따른 不確實性和 契約書式的 交戰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去來當事者들은 EDI去來에 앞서서 當事者間 包括賣買約定書(master purchase and sales agreement) 또는 EDI去來約定(trading interchange agreement)을 締結하고 이 約定에 商業的 去來條件을 설정하거나 그 條件을 決定하는 方法을 規定할 수 있다.

한편 1987년 國際商業會議所(ICC)가 '電送方式에 의한 貿易資料交換에 관한 取扱統一規則'(Uniform Rules for Conduct for International Trade Data by Teletransmission)을 제정한 이후 다수의 EDI約定모델³¹⁾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EDI사용자들은 잠정적으로 EDI去來約定樹立時 활용할 수 있다.

商業的 去來條件에 대한 諸約定은 두가지 立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하나는 去來에 適用될 商業的 去來條件이 EDI에 고유한 특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條件은 EDI約定에서 취급해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立場이다. 다른 立場으로는 EDI約定은 當事者間에 交換되는 정보에 국한하여 適用해야 하며, 當事者間的 商業的 또는 契約的인 義務에 適用해서는 안된다는 立場이다.³²⁾ 前者의 立場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는 美國 변호사협회의 EDI去來當事者間 約定모델(American Bar Associatio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Trading Partner Agreement : ABA 모델)과 캐나다의 約定모델을 들 수 있으

31) 산업별 EDI사용자그룹의 약정으로서는 해운업계의 CMI, EDI산업약정으로는 영국, 캐나다 EDI협회약정, 그 밖의 미국변호사협회의 약정, EC의 TEDIS프로그램 등이 있음.

32) Amelia Boss, "The Proliferation of Model Interchange Agreement," Presentation RL 16 p.553(at Third International Congress of EDI USERS).

며, 後者の 立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EDI約定모델을 들 수 있다.

비록 美國의 ABA모델은 UCC에 근거하여 美國企業들간의 EDI를 이용한 商 去來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지만, EDI去來時 去來條件설정에 대한 하나의 實務的 접근방향을 提示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ABA모델에 관하여 契約書式的 交戦問題와 관련하여 論議한다.

2. ABA모델에서의 去來條件設定에 관한 實務的 接近方式과

契約書式交戦의 問題

ABA모델 제 3조 1항은, 當事者間에 별도의 包括約定이 締結되지 않은 경우 去來條件에 관하여 다음 세가지 選擇사항을 規定하고 있다.

[A] 決濟條件을 포함한 去來條件이 본 約定에 기재되어 있는 條件.

[B] 附錄에 첨부되어 있거나 부록에 明記되어 있는 각 當事者の 인쇄된 표준양식[각 當事者가 상호 서면 通知를 통하여 수시로 수정이 가능함]. 각 當事者는 이 양식상의 條件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去來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툼 또는 紛爭(conflict or dispute)은 마치 이 去來가 이러한 양식을 사용하여 수행한 것과 같이 해결할 것에 合意한다.

[C] 適用法(UCC)에 따라 決定될 수 있는 附加條件(additional terms and conditions).

上記 세가지 選擇條項중 [A]방식은 가장 확실하면서 바람직한 方法이지만

현실적으로 EDI시행전에 契約條件을 협상하고 合意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방식이다.³³⁾ 交渉地位(negotiation position)가 현저히 상이한 수백개의 去來처와 EDI를 시행해야 하는 當事者는 모든 契約條件에 대하여 사전에 合意하기는 곤란한 일이다. 이에 대하여 Salvage변호사는 交渉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去來當事者들이 保證, 引渡, 賣渡人과 買受人의 책임, 변호사비용 등 小數의 爭點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交渉할 것을 제의하고 전자장비제조업을 상정하여 한 페이지 분량의 約定모델을 提示하고 있다.³⁴⁾

[B]방식은 去來條件에 관한 確實性이 약간 결여되어 있지만 업계의 실무자들이 ABA모델 초안자들에게 요구한 것으로서 業界의 共通된 慣行을 반영한 것이다.³⁵⁾ 이 選擇條項은 종래의 契約書式의 交戰에서와 같이 UCC 제 2-207조가 適用되는 것이다. [B]選擇條項下에서 標準 契約書式은 동시에 交換되지만, 이 표준서식은 특정한 전자메시지에 해당한다(約定모델 제 3조 1항에 대한 주석 7). 따라서 이 標準契約書式은 관련 전자메세지가 交換된 순서와 동일하게 交換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選擇條項 [B]는 UCC 제 2-207조의 賣渡人이나 買受人에게 중립적인 不確實性³⁶⁾을 EDI去來에 그대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不確實性을 지니고 있다.

33) Benjamin Wright,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Little Brown and Co., 1990, pp.322-323.

34) Ralph M. Savage, op. cit., p.68.

35) Benjamin Wright, op. cit., p.322.

36) 매도인이나 매수인 어느 당사자 일방의 계약조항이 일방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립적이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UCC의 보충규정이 적용될 경우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불리한 입장임.

上記 [B]와 같은 狀況에서 買受注文書(purchase order)는 狀況에 따라 請約도 될 수 있고 承諾도 될 수 있다. II장에서 論議한 바와 같이 UCC 제 2-207조, 비엔나협약 제 19조 및 傳統的인 完全일치원칙하의 契約書式の 交戦에 대한 해결방식에서, 어느 當事者의 契約書式이 請約이 되느냐 承諾이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問題이다. 定型화된 메시지로 去來交渉이 이루어지는 EDI去來에서는 當事者간에 請約이 되는 文書에 對應하는 承諾이 되는 電子文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當事者간의 約定이 선행되어야 한다.³⁷⁾

만약 EDI를 통한 國際/物品賣買契約에서 當事者간에 買受注文確認書(Purchase Order Acknowledgement)³⁸⁾를 承諾文書로 約定하지 않고, 컴퓨터自動受信通知書(Functional Acknowledgement)³⁹⁾만을 受信者가 電送한 承諾文書(acceptance document)로 活用할 경우 賣渡人과 買受人간에 많은 問題를 야기시키게 된다. EDI去來約定에서 請約과 承諾에 해당하는 電子文書を 約定하지 않았다면 賣渡人の 確認을 거치지 않은 FA는 賣渡人の 承諾이 될 수 없다. 즉 EDI去來에서 當事者間 意思의 合致(meeting of the minds)를 통한 有効한 承諾의 成立은, 의사의 합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相對方의 確認을 거친 電子文書(이 경우 買受注文確認書)를 肉眼으로 비교할 수 있을 때

37) 예를 들면 ABA모델의 부록에서와 같이 미국국가표준(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ANSI)에 의한 Transaction Set Number와 문서명(예 850은 Purchase Order)을 기재함.

38) ANSI문서의 경우에는 Transaction Set 855, UN/EDIFACT문서의 경우에는 ORDRSP(Purchase Order Response Message : UN/ECE/wp. 44/R. 741).

39) EDI거래에서는 종래의 문서거래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컴퓨터에 의한 자동적인 메시지 수신통지서(FA)가 존재한다. FA는 메시지의 수신자가 그 수신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메시지의 발신자에게 보내는 통지로서 EDI software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창출되어 전송됨(ANSI, Transaction Set 997; UN/EDIFACT, FUNACK).

만이 가능할 것이다.⁴⁰⁾

[C]選擇條項은 當事者間 EDI去來約定이나 去來條件에 관한 合意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UCC 제 2편의 補充規定에 의거하여 決定된다. UCC의 適用을 받는 賣渡人은 특히 [C]選擇條項을 기피한다. 왜냐하면 UCC 제 2편의 補充條項은 一般的으로 賣渡人에게 不利하게 規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BA모델에서는 商業的 去來條件의 決定 및 이와 相關한 契約書式의 交戰問題를 文書의 去來에서와 동일한 狀況을 설정하여 選擇條項을 코드화하고 있다. 文書의 去來에서와는 달리 定型化된 電子文書가 컴퓨터간에 電送되고 자동으로 회신기능을 電送하는 EDI이용去來에서는 當事者간에 請約과 承諾에 해당하는 電子文書의 約定이 중요하다.

IV. 結論

지금까지 論議한 契約書式의 交戰問題에 관한 세가지 接近方式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傳統的인 契約法에서의 接近方式은 '完全一致의 原則'을 適用함으로써 去來의 安全性과 確實性を 보장하고 있으나, 契約條項에 관한 紛爭시 최후에 送付된 當事者 一方의 條件이 適用됨으로써 公平性を 결여하고 있으며, 또한 貿易實務와는 遊離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去來當事者의 公平性を 제고하고, 物品賣買의 실무세계에 탄력적으로 접근하려 한 美國 統一商法典 제 2-207조의 規定은 어느 정도 當事者間 公平성

40) Ralph M. Savage, op. cit., pp.66-67.

의 제고에는 기여했으나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法規適用의 복잡성과 契約條項適用의 不確實性을 내포하고 있다.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협약 제 19조는 傳統的 接近方式과 美國 統一商法典의 취지를 절충한 측면이 있으나, 同條文의 內容면에서는 사실상 傳統的 接近方式인 完全一致의 原則에 근접하고 있다.

契約書式の 交戦問題에 관한 위와같은 여건하에서, 이 問題에 대하여 貿易實務者가 대처할 수 있는 方法은 다음과 같이 고려될 수 있다.

契約書式の 交戦問題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은 모든 去來에서 契約書의 모든 條項에 대하여 當事者間에 合意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方法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契約條項에 대한 合意導出이 곤란한 경우, 貿易實務者로서는 중요한 契約條項, 商業的 危險이 큰 시장의 去來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大規模契約件에 관하여 去來相對方과 契約書를 작성하고 合意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품의 品質上 紛爭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을 當事者間에 合意하여 契約에 명기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빈번한 去來가 있는 當事者間에는 公明하고 합리적인 包括契約書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¹⁾

구체적인 賣買契約과 관련하여 契約書式이 請約, 承諾 및 對應請約으로서 交換된 경우는, 각각의 서식이 무엇에 해당되는지 相對方에게 명백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傳統的 契約法理論下에서는 최후에 契約書式을 送付하는 것이 有利하므로 가능한 한 相對方에게 적절한 文言이 기재된 返送確認書(confirmation slip)를 첨부하여 契約書式을 提示하는 것이

41) 新堀 聰, 前掲書, p.91.

바람직하다.⁴²⁾ 만약 請約에 해당하는 契約書式과 承諾에 해당하는 契約書式條項이 相違할 경우, 傳統的 契約法理論에서는 契約은 成立하지 않으므로 대책은 없다.

그러나 契約書式의 交換後 兩 當事者가 契約의 成立을 確信하고 履行行爲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의 시세급변에 의해 契約을 회피하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된 경우 傳統的인 契約法理論에서도 비엔나협약 제 7조의 (國際貿易에서의 信義遵守) 등을 인용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契約書式이 口頭, 텔렉스 등에 의하여 이미 成立된 契約內容을 確認하는 경우에는 當事者는 이미 成立된 契約內容에 따라 법률적으로 구속된다. 따라서 當事者의 一方이 確認書의 條項의 相違를 이유로 履行을 기피할 때는 契約違反을 이유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한편 國際物品賣買契約時 EDI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契約書式의 交戰問題는 상존하고 있으며, 定型화된 電子文書가 交換되는 EDI去來에서는 개별적인 契約條項의 설정이 곤란하고 간과되기 쉬우므로, 當事者間에 EDI시행에 앞서서 定型貿易去來條件의 활용을 포함하는 一般去來約定書의 締結이 요청된다. 또한 一般去來約定書나 EDI去來約定에서 사전에 請約文書와 承諾文書を 規定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契約書式의 交戰問題에 관하여, 賣買 當事者間에 去來의 安全性, 確實性, 公平性을 동시에 보장해 주는 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므로 契約當事者들이 이 問題에 대한 諸接近方式을 충분히 이

42) Clive M. Schmitthoff, *Export Trade*, 9th ed., Stevens & Sons, 1990, p. 99.

해하고 사전에 紛爭解決을 위한 노력을 傾注하는 것이 요청된다.

- 參考文獻 -

- 宋啓儀, 「國際物品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1991.
- 梁暎煥·吳元奭, 「貿易商務論」, 法文社, 1991.
- 林泓根·李泰熙 共編,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上の 諸問題」, 삼지원, 1991.
- 新堀 聰, 「國際統一賣買法」, 同文館, 1991.
- _____, 「貿易取引入門」, 日本經濟新聞社, 1992.
- Atiyah, P. S. et al.,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 4th ed., Clarendon Press, 1989.
- Boss, Amellia, "The Proliferation of Model Interchange Agreement," *Presentation at Third International Congress of EDI USERS*.
- Glaston, Mina M., and Smit, Hans eds., *International Sales :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Matthew Bender. 1984.
- Guest, A. G., et al., eds., *Benjamin's Sale of Goods*, 3rd ed., Sweet & Maxweel, 1987.
- _____, *Chitty on Contracts*, 25th ed., Sweet & Maxwell, 1983.
- Savage, Ralph M., "How to Resolve Legal Issues in EDI Agreements :

Acknowledgements and the Battle of the Forms," *EDI Forum*
No.1, 1991.

Schmitthoff, Clive M., *Export Trade*, 9th ed., Stevens and Sons, 1990.

White, James J., & Summers, Robert S., *Uniform Commercial Code*, 3rd
ed., West Pub., 1988.

Wright, Benjamin,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Little Brown and
Co., 1990.